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: 부동산 별지와 예금 처리 합의를 구분합니다

가상 협의서 본문·별지·점검표를 분리한 휴대폰용 읽기본

가상 사건의 전제

피상속인 김한결이 2026년 1월 사망했고 배우자는 먼저 사망했습니다. 성년 자녀 김가람·김다온이 공동상속인 전원이고, 가상 부동산 한 건과 보통예금 한 계좌가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. 이 가상 계좌의 사망 시점 원금은 400만 원,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 2분의 1이며, 예시를 단순화하기 위해 사망 후 입출금·이자·선지급은 없다고 가정합니다. 실제 사건에서 그 내역이 있으면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. 상속포기·한정승인·유언·특별수익·기여분·미성년 상속인은 이 예시의 사실관계에 없습니다. 아래 이름·주소·재산 표시·계좌표시·작성일은 실제 사람이나 재산을 가리키지 않는 가상 정보입니다.

핵심 구별: 부동산은 두 상속인이 협의하여 김가람이 단독 취득하는 예시입니다. 가분적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. 다만 특별수익·기여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예금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. 아래 합의는 각자의 은행 수령분을 받은 뒤 상속인 사이에서 정산하는 가상 약정이며, 그 자체로 은행의 지급·해지 절차를 끝내는 문구가 아닙니다.

가상 협의서 본문 - 아래 구역만 교육용 서면 예시

상속재산분할협의서

피상속인: 망 김한결 / 사망일: [가상일 2026년 1월 15일]

공동상속인: 김가람, 김다온 / 두 사람이 이 가상 사례의 상속인 전원

위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중 아래 표시한 부동산의 귀속과 예금채권의 상속인 간 처리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.

제1조(부동산) 별지 1에 표시한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김가람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합니다. 별지 1은 이 협의서의 일부로 합니다.

제2조(예금채권 수령 후 정산) 별지 2의 가상 보통예금 400만 원에 관하여 김가람과 김다온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지급을 해당 금융기관에 별도로 확인·청구합니다. 김가람은 이 계좌에서 자신의 몫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김다온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되, 이 예시에서 그 상한은 200만 원으로 합니다. 김가람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지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 이 정산은 두 상속인 사이의 약정일 뿐, 은행에 대한 권리자 변경·전액 인출·계약 해지를 이 조항만으로 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제3조(이 문서에 적지 않은 사항) 별지에 적지 않은 상속재산, 상속채무의 대외적 부담, 제2조의 예금 수령 후 정산금 외에 추가 정산금이 있는지와 그 액수는 이 예시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. 별도 확인·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이미 해결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

이 가상 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래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 실제 제출 형식과 인감·본인서명 관련 증빙은 등기소·금융기관의 요구를 사건별로 확인합니다.

작성일: [가상일 2026년 10월 4일]

공동상속인 김가람: [가상 서명·날인 자리]

공동상속인 김다온: [가상 서명·날인 자리]

별지 1 - 부동산의 표시(가상)

1동 건물

이 예시의 가상 표시: 서울특별시 예시구 가상동 100 / 가상아파트 제101동 / 철근콘크리트조 15층 공동주택 / 연면적 2,400.00㎡

실제 작성 전 대조: 1동 건물의 소재·건물번호·구조·용도·면적 대조

전유부분

이 예시의 가상 표시: 제101동 제201호 / 철근콘크리트조 주거용 / 전유면적 84.00㎡

실제 작성 전 대조: 전유부분의 건물번호·구조·용도·면적 대조

대지권 목적 토지

이 예시의 가상 표시: 서울특별시 예시구 가상동 100 대 10,000.00㎡

실제 작성 전 대조: 토지 소재·지번·지목·면적 대조

대지권

이 예시의 가상 표시: 소유권대지권 / 비율 10,000분의 55

실제 작성 전 대조: 대지권 종류·비율 대조

취득자

이 예시의 가상 표시: 김가람 단독

실제 작성 전 대조: 합의 조항·등기 신청의 권리자 표시 일치 여부

이 표는 실제 등기기록이 아닙니다. 집합건물의 1동 건물, 전유부분, 대지권 목적 토지 및 대지권 표시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조해 옮겨야 합니다. 토지·단독건물이라면 대상에 맞는 표시 항목으로 다시 구성합니다.

별지 2 - 예금채권 식별과 처리 확인(가상)

금융기관·명의인

이 예시의 가상 표시: 가상은행 / 망 김한결

실제 작성 전 대조: 실제 금융기관명·명의인과 계약 종류

예금 종류·계좌

이 예시의 가상 표시: 보통예금 / [가상 계좌 표시: 000-000-0000]

실제 작성 전 대조: 은행 확인자료로 정확한 계좌와 예금 종류 확인

금액·범위

이 예시의 가상 표시: 사망 시점 원금 400만 원 / 사망 후 거래·이자·선지급 없음(가상 전제)

실제 작성 전 대조: 실제 사망 시점 잔액, 그 후 거래·이자·이미 지급된 금액 확인

상속인 간 처리

이 예시의 가상 표시: 각자 상속분 지급 확인 후 김가람의 실제 수령액(최대 200만 원)을 김다온에게 정산

실제 작성 전 대조: 실제 지급액·지급일·정산금 이체 증빙 확인

이 별지는 예금채권 자체가 부동산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동 협의분할되거나, 김다온이 이 협의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전액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.

독자 설명 - 위 가상 협의서의 일부가 아님

- **상속인 전원부터 확인:** 피상속인·상속인의 가족관계와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, 유언·상속포기·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 공동상속인 일부가 빠진 문안을 '전원 합의'로 제출하지 않습니다.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은 대리 구조를 별도로 검토합니다.
- **부동산은 등기기록과 문자까지 대조:** 가상 별지의 주소·호수·면적·대지권 비율은 실제 값이 아닙니다. 실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와 취득자·지분·합의 조항을 맞춰 봅니다.
- **예금은 은행에 제출하기 전 확인:** 상속인 사이의 정산 약정과 은행에 대한 지급·해지 요건은 같지 않습니다. 예금 종류, 상속분, 사망 후 거래와 이자, 기존 지급, 은행의 제출자료와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. 특별수익·기여분 등으로 가분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인지도 별도로 살핍니다. 이 예시의 정산 문구를 은행이 그대로 승인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.
- **채무·세금은 이 예시 밖의 문제:**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가족 내 합의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책임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. 세금의 신고·부담은 관계 법령과 사건 자료를 별도로 대조합니다.
- **서명과 제출자료:** 상속인 전원이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·날인합니다. 등기 또는 은행 제출 시 필요한 증명서 종류, 인감 또는 서명 방식, 발급 시점과 원본 수량은 제출처와 사건별로 확인하며 이 예시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.

공식 근거·검토 범위

- 민법 제1013조(협의에 의한 분할) (law.go.kr)
- 민법 제1015조(분할의 소급효) (www.law.go.kr)
- 민법 제921조(친권자와 자녀의 이해상반행위) (law.go.kr)

- 서울고법 1991. 1. 18. 선고 89르2400 판결 (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의 원칙과 상속재산분할) (www.law.go.kr)
- 서울고법 2014. 6. 2. 자 2013브127 결정(가분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다루는 예외적 사정) (www.law.go.kr)
- 부동산등기법 제40조(건물의 표시) (law.go.kr)
-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(집합건물의 표시) (www.law.go.kr)
-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94674 판결(청약저축계약의 해지·반환청구 구별; 일반 보통예금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) (www.law.go.kr)
-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7다8809 판결(상속채무의 내부 약정과 채권자에 대한 효력) (law.go.kr)
-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등기·협의분할 안내 (www.easylaw.go.kr)

자료 대조: 2026-10-04. 분리된 AI 법률 문구 검수 완료. PDF·모바일·공개 검수는 별도이며,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